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016. 04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개요

가. 계획의 필요성

1) 제주항 여건분석

(가) 제주외항

○ 제주외항내 크루즈 부두는 8만톤급 1선석과 서방파제 배면에 임시 접안부두로 활용하고 있으며, 크루즈 해상관광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이용객 및 관광객 증가와 크루즈선 대형화에 따른 13만톤급 이상의 초대형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시 항내수역이 협소하여 입항이 불가한 실정임.

(나) 제주내항

○ 제주내항은 화물, 여객, 관공선 기능이 혼재되어 운영하고 있고 선석도 포화상태이며, 여객선 대 형화로 수역이 협소하고 선석이 부족한 실정임.

(다) 탑동항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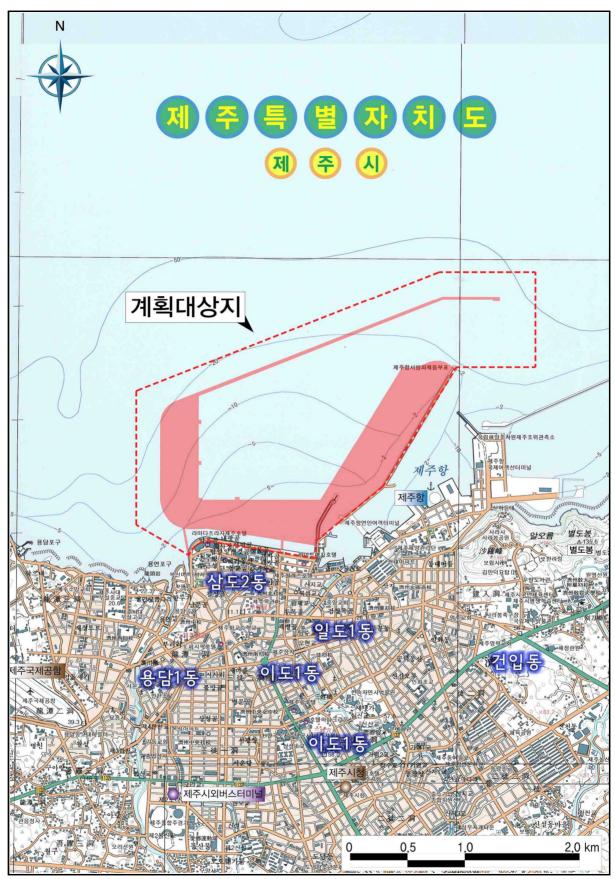
○ 탑동항만은 탑동지역의 월파 피해 및 호안 세굴방지대책에 국한된 계획만 수립되어 있으며, 항 내수면적이 협소하고 이용제한 및 장래 확장 불가한 실정으로, 지역경제 기여 및 원도심 개발과 의 연계성이 미흡함.

나. 계획의 목적

- 본 계획은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을 모색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동북아 물류 및 해운·항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문항인 제주항이 동북아 물류, 해운·항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만시설에 대한 항만기능 재배치
- 제주신항은 제주항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관광객 및 크루즈 여객 수요를 반영하여 해양 관광·레저 허브지구 조성을 통한 국제적인 관광미항으로 육성

〈표 1.1-1〉 계획의 목표

개발비전	○ 해운·항만 기능확장을 통한 더 큰 제주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		
개발목표	○ 해운·항만물류 SOC확장 ○ 수산·관광·원도심재생 등 활성화 도모 ○ 제주항 항만기능 재배치를 통한 항만 경쟁력 확보		
개발방향	 ○ 경쟁력있는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으로 육성 ○ 수산·해양관광·레저의 허브항만 구축 ○ 탑동재해방지 및 원도심 활성화 ○ 제주도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그림 1.1-1) 계획대상지 위치도(지형도)

1.2 관련 법적근거

가.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및 예정지역

○ 본 계획은「신항만건설촉진법」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및 제5조(예정지역의 지정 등)에 따라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기 본계획 수립 및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을 지정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함.

〈표 1,2-1〉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및 예정지역 지정 법적근거

구 분	내 용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u>해양수산부장관</u> 은 신항만건설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신항</u>
	<u>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u> 을 <u>수립</u> 하여야 한다.
	② <u>해양수산부장관</u> 은 제1항에 따라 <u>기본계획</u> 을 <u>수립</u> 하려면 <u>미리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u>
	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u>해양수산부장관</u> 은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u>필요한 수역(水域) 및 지역</u> 을
	<u>신항만건설 예정지역</u> (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u>지정</u> 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u>해양수산부장관</u> 은 제1항에 따라 <u>예정지역</u> 을 <u>지정</u> 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려
	면 <u>미리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u>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였
	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예정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석(土石)·자갈·모래의 채취,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승인·인가·면허 또는 등록 등(이하 이 항에서 "허가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허가등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제주신항만을 건설하기 위한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환경영향 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13조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제16조에 따른 환경부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표 1.2-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내 용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표 1,2-3〉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라. 항만의 건설	1)「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제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 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는 때
	2)「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 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는 때
차. 개간·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2]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가. 추진경위

○ 2011. 07. 29 : 제3차(2011~2020) 항만기본계획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02호】

○ 2014. 09. 04 : 전국항만기본계획 변경(제주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완료

【국토환경평가과-2954】

○ 2015. 12. 02 : 항만 기본계획 변경 고시 (인천항, 삼천포항, 제주항, 중화항)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80호】

○ 2015. 04. 07. :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위촉 및 심의요청 【항만개발과-1287】

○ 2015. 04. 07~21 :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2016. 04.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나. 향후 추진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및 예정지역 지정 고시

1.4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나. 계획수립기관 : 해양수산부

다. 협의기관 : 환경부

라. 계획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16년목표연도: 2030년

2)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일원

마. 계획의 세부내용

1) 신항만 건설기본계획 및 예정지역

가) 신항만 건설기본계획

〈표 1.4-1〉 신항만 건설기본계획

	/		1 - 17	
	구	분	기본계획 규모	비고
		방 파 제	2,820m	
외 시	곽 설	방 파 호 안	2,090m	
		소 계	4,910m	
 계 시	류 설	안 벽	3,330m	국내여객부두 9선석 크루즈부두 4선석
		방 파 제	71,910m²	2,820m(L) X 25.5m(B)
뀖히	ᄜᄭ	항 만 부 지	463,600 m²	
계획면적	배후부지	832,700 m²		
		소 계	1,368,21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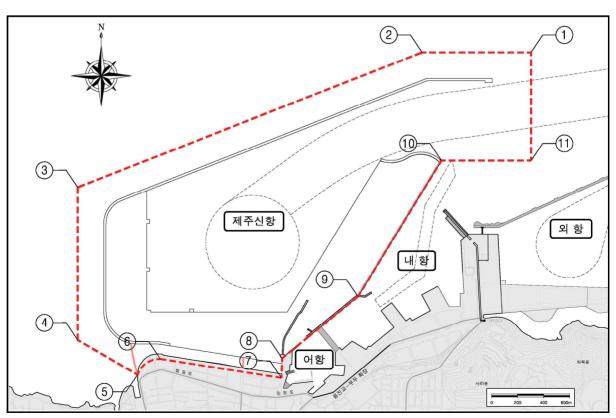
나) 신항만 예정지역

〈표 1.4-2〉 신항만 예정지역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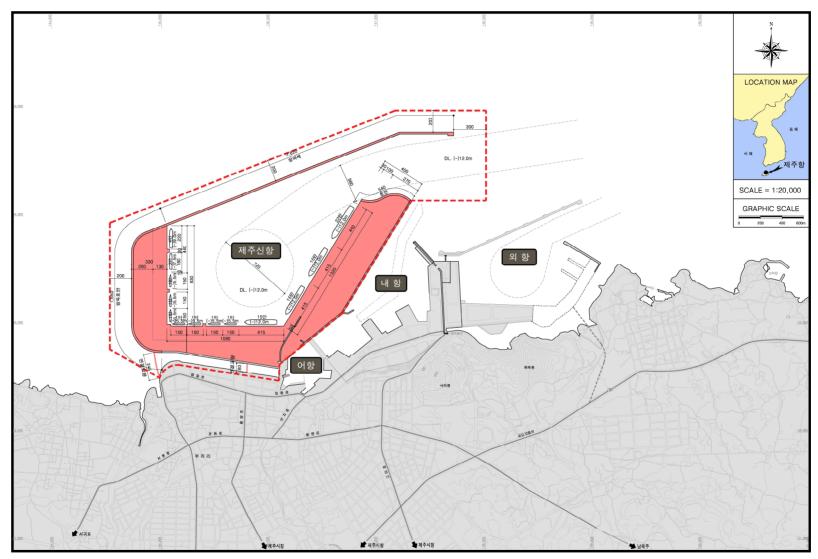
	구	분		예정지역 규모	비고
Τ.	주신형) 만예정	시역	5,066,000 m²	
	육	역	부	1,426,000 m²	탑동호안 구간 일부 포함
	수	역	부	3,640,000 m²	

〈표 1.4-3〉 제주신항만 예정지역 좌표

구 분	X (m)	Y (m)	비고
	158,080	105,284	
2	157,242	105,284	
3	154,597	104,245	
4	154,597	103,073	
<u> </u>	155,058	102,807	
6	155,232	102,929	
7	156,163	156,163	
8	156,168	156,168	
9	156,750	156,750	
	157,392	157,392	
	158,020	158,080	



(그림 1.4-1) 제주신항만 예정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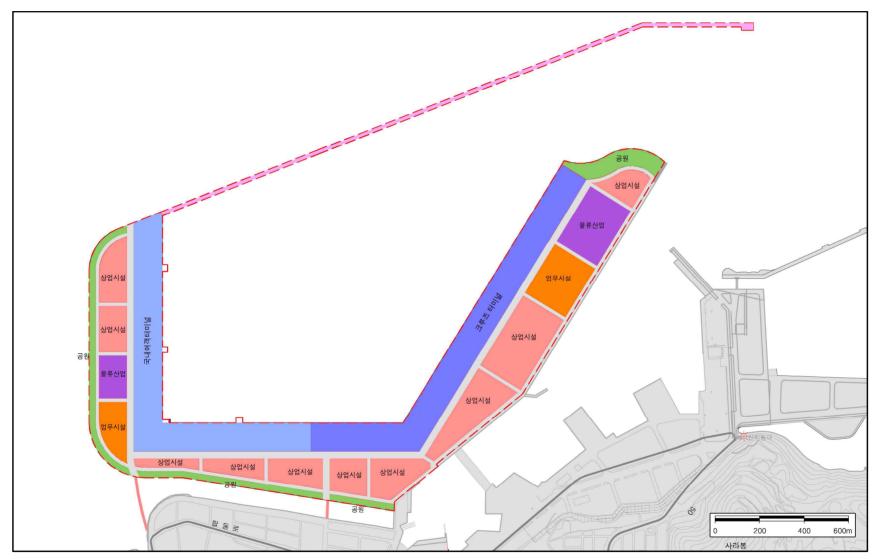


(그림 1.4-2)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및 예정지역 계획평면도

3) 토지이용구상(안)

〈표 1.4-4〉 토지이용구상(안)

	:	구 분		계획 규모	비율(%)	비고
의 곽 시 설		방 파 저	ঝ	71,910m²	5.3	
		크 루 즈 터 미 날	뒬	240,200 m²	17.6	
항 만 부 지		국 내 여 객 터 미 날	뒬	223,400 m²	16.3	
	소	7	계	463,600 m²	33.9	
	공	급 시 설 부 저	Ŋ	514,200m²	37.6	
		상 업 시 설 용 7	7	346,000 m²	25.3	
		업 무 시 설 용 자	Ŋ	82,700 m²	6.0	
항 만 배 후		물 류 산 업 시 설 용 제	Ŋ	85,500 m²	6.2	
메 후 부 지	공공	당 시 설 부 저	7	318,500 m²	23.3	
		공 원	원	103,600 m²	7.6	
		도	로	214,900 m²	15.7	
	소	7	계	832,700 m²	60.9	
합		7	계	1,368,210m²	100.0	



(그림 1.4-3)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및 예정지역 토지이용구상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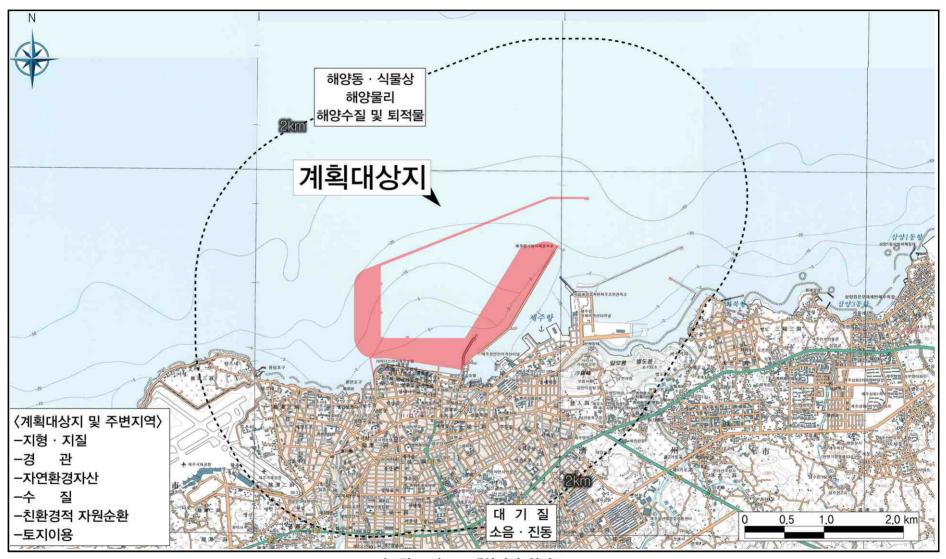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5.12, 환경부」 및 「환경영향 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16.01.21, 환경부고시 제2016-22호」를 기초로 하여, 기존에 협의된 항 만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하였음.
- 금회 계획수립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계획특성 및 계획대상지의 입지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중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의 평가항목 인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에 대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음.

표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설정사유		
계획의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상위 및 관련 계획 포함여부와 기본 방향 부합성 확보
적정성	대인	t 설정·분석의 적진	정성	계획대상지	계획비교, 입지 대안검토를 통한 계 획수립
		생물다양성・	해양 동·식물상	계획대상지 경계기준 2km 범위	계획시행시 해양동·식물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서식지보전	지연환경자산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자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의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계획 시행시 조간대, 해안선 등의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지형변화 및 인공구조물 설치에 따른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수환경의 보전	해양물리	계획대상지 경계기준 2km 범위	해수유동, 침식 및 퇴적, 해수교환율 변화 등으로 해양환경 영향이 예상 되는 지역
입지의 탁당성			수질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계획 시행시 상수 및 오수처리계획
				계획대상지 경계기준 2km 범위	건설공사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 향이 예상되는 지역
	생활환경의	환경기준 발환경의 부합성	해양수질 및 퇴적물	계획대상지 경계기준 2km 범위	계획 시행시 부유사확산 등 해양환 경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안정성		소음·진동	계획대상지 경계기준 2km 범위	건설장비 가동시 소음·진동의 영향 이 예상되는 지역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공사인부 및 공사장비로 인한 각종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계획대상지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은 수환경의 보전 및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항목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그림 2-1) 대상지역 설정도

제3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의 설정

- 대안"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함.
- 본 계획의 대안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16.01.21, 환경부고시 제2016-22호」 [별표 3]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하였으며, 대안에 대한 비교·검토를 실시할 계획임.

<표 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 종 류	대안 선정방법	비고
계획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선 정
수단・방법	o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입 지	o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 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선 정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기 탁	○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토지이용구상(안) 변경에 따른 대안	선 정

자료 :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41호, 2015.08.21)

<표 3-2> 본 계획의 대안 설정

대안비교		대안의 설정
계획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 -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Action) -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입	지	○ 평면계획(안) 비교 - 1안 : 1,368,210㎡(외곽시설 : 4,910m, 계류시설 : 3,330m, 계획면적 : 1,368,210㎡) - 2안 : 1,556,000㎡(외곽시설 : 6,162m, 계류시설 : 3,240m, 계획면적 : 1,556,000㎡) - 3안 : 2,185,000㎡(외곽시설 : 6,280m, 계류시설 : 4,250m, 계획면적 : 2,185,000㎡)
기	합	o 토지이용구상(안) 변경에 따른 비교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시 제시할 계획임

3.2 대안별 비교·검토

가. 계획비교

구 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Action)
평 면 도	제주양계획평면도 (Machine Marker State Sta	Today and the state of the stat
개 요	○ 탑동 친수시설 - 관광수요 증대로 인한 친수공간 확보 - 파랑내습 및 월파 피해 방지 - 안정적인 구조물 창출과 관광수요 창출로 개 발계획 극대화	 제주신항 관광객과 크루즈 여객 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반영하여 국제적인 관광미항으로 육성 제주항의 항만 기능 재배치를 통한 항만 경쟁력 확보 경쟁력 있는 국제 해양관광허브지구로 개발
개발규모	○ 탑동 친수시설 - 외곽시설 : 2,757m - 계류시설 : 200m - 계획면적 : 108,628㎡ - 선양장 : 50m - 요트계류장 : 1식	○ 제주신항 - 외곽시설 4,910m - 계류시설 3,330m - 계획면적 : 1,368,210㎡ - 크루즈 4선석 - 국내여객부두 9선석
장 점	o 개발규모가 작아 환경적으로 유리	○ 국내·외 크루즈, 해안·항만 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처 가능 ○ 원도심 재생사업과 연계성 우수
단 점	○ 항만이 협소하여 이용이 제한됨 ○ 장래확장 불가 및 원도심 재생 연계성 미흡	o 제주신항 개발에 따른 해안 지형의 변화
채 택 안		0

나. 입지 조정

구 분	1안	2안	
평 면 도	TOTAL	West a result of the collection of the collectio	TO THE STATE OF TH
계획개요	o 제주신항과 탑동지역을 이격하여 친수공간확보	○ 항만배후 부지를 원도심지역에 인접하게 배치 원도 심 활성화 도모	○ 원도심과 연계하여 개발 원도심 활성화 극대화
개발규모	 ○ 계획면적: 1,368,210㎡ ○ 외곽시설: 4,910m ○ 계류시설: 3,330m (크루즈부두 4선석, 국내여객부두 9선석 등) ○ 항만배후부지: 832,700㎡ 	 ○ 계획면적: 1,556,000㎡ ○ 외곽시설: 6,162m ○ 계류시설: 3,240m (크루즈부두 4선석, 국내여객부두 9선석 등) ○ 항만배후부지: 1,171,000㎡ 	 ○ 계획면적: 2,185,000㎡ ○ 외곽시설: 6,280m ○ 계류시설: 4,250m (크루즈부두 4선석, 국제여객부두 3선석, 국내여객부두 7선석 등) ○ 항만배후부지: 1,607,000㎡
장 점	○ 장래 확장 유리 ○ 매립면적이 환경성 양호	o 선석의 수평적 배치로 선박운영 유리	○ 강래 확장성 유리 ○ 배후부지와 연계 진출입이 양호
단 점	○ 항내 수역이 다른안 대비 협소	○ 항로간섭으로 운영 불리 ○ 대수심 지역에 건설 경제성·환경성 보통	o 대수심 지역 매립으로 경제성·환경성 불리
채 택 안 선정사유	O ○ 장래 확장 가능성이 충분하며, 공사시 기존 항만운	- 경 간섭이 적고, 장래 항만 수면적 확보에 유리한 1안을	을 선정안 <u>으로</u> 채택

제4장 평가항목 및 범위등의 설정

4.1 평가항목 설정

○ 본 개발기본계획의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1]의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16.01.21, 환경부고시 제2016-22호」 및 환경영 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계획 수립시 평가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4.1-1 평가항목 선정 및 사유

구분	평	기항목	선정/제외	선정사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선정	○ 상위 및 관련 계획 포함여부와 기본방향 부합성 확보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선정	o 계획비교, 입지, 토지이용 대안검토를 통한 계획수립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 서식지보전	선정	○ 생태자연도, 각종 보호구역 분포 파악 ○ 매립 등으로 인한 해양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선정	○ 지형·지질 현황 및 입지특성 파악 ○ 매립으로 인한 조간대, 해안선 등의 지형변화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선정	○ 자연경관 현황 파악 ○ 계획에 따른 경관변화 분석	
		수환경의 보전	선정	○ 주변해역의 해양물리 현황 파악 ○ 계획 시행에 따른 해수유동, 침식 및 퇴적, 해수 교환율 변화 ○ 계획 시행에 따른 상수도 및 오수 처리계획	
입지의 탁당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선정	 ○ 대기질, 해양수질 및 퇴적물, 소음·진동 등 현황 조사 ○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 계획 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소음·진동, 해양·수저질 영향 발생 → 항목별 환경기준 부합여부 검토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선정	○ 오수, 폐기물 처리계획은 자연환경의 보전(수환경의 보전),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친환경적 자원 순환) 항목에서 제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선정	○ 제주시 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파악 ○ 공사인부 및 공사장비로 인한 각종 폐기물 발생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선정	o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	

4.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표 4.2-1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계획의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o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o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계득크 적정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o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대안	o 계획비교, 입지, 토지이용 대안 검토
입지의 탁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o 해양 동·식물상	○ 해양동·식물상 현황조사 ○ 매립 등으로 인한 해양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o 자연환경자산	○ 생태자연도, 보호구역 등 문헌조사 실시 및 영향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o 지형·지질	○ 지형도, 수심측량도 등을 이용한 지 형현황 파악 ○ 재료원 수급계획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ㅇ 경관	○ 자연경관 현황 파악 ○ 경관변화 예측 및 분석
		수환경의 보전	ㅇ 해양물리	○ 수치모형실험(해수유동변화, 퇴적물 이동, 해수교환율)을 통한 영향 검토
			o 수질	o 상수 및 오수처리계획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o 대기질	○ 대기질 현황조사 ○ 공사시 대기질 영향검토 및 저감방 안 수립
			o 해양수질 및 퇴적물	○ 해양수질 및 퇴적물 현황조사 ○ 부유사확산 실험을 통한 영향 검토
			o 소음·진동	○ 소음·진동 현황조사 ○ 공사시 소음·진동 발생 특성 및 영 향 예측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o 오수, 폐기물 처리계획은 자연환경의 보전(수환경의 보전),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친환경적 자원순환) 항목에서 제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o 친환경적 자원순환	○ 통계자료를 통한 폐기물 발생추이 분석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및 공사인부 에 의한 폐기물 발생량 및 분뇨 발 생량 예측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o 토지이용	o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4.3 환경현황 조사계획

○ 본 계획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현황 조사는 대기질, 해양수질 및 퇴적물, 해양동·식물상, 소음·진동 등의 항목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해양수질 지점중 제주외항 3단계 3, 4지점을 추가하여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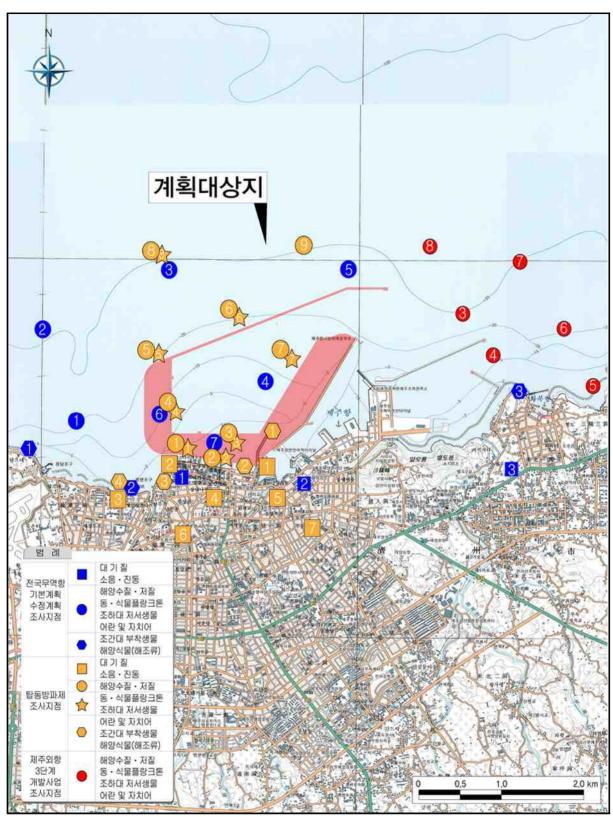
표 4.3-1 환경현황 문헌조사 시행계획

	7 8	エルロフト	조사항목		
구 분		조사기간	중첩항목	비중첩항목	
대기질 -	제3차 전국 무역항 ¹⁾	2015.11.10~11.11	○ PIV+10, PIV+2.5, SO ₂ , NO ₂ , CO, O ₃ , Pb, 벤젠	-	
	제주항 탑동방파제 ²⁾	2015.11.27~11.30	총 8개 항목		
	제3차 전국 무역항1)	2015.11.11	○ 염분, 수온, pH, DO,	o Co, t유기인	
해양 수질	제주항 탑동방파제 ²⁾	2015.11.19	투명도, SPM, COD, TOC, T-N, T-P, DIN, DIP, CN, Cu, Pb, Zn, Cd, Ni, Cr ⁶⁺ , As, Hg, 저층DO포화도, tPCBs, Chl-a, 용매추출유분, 총대장균군수 총 26개 항목	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 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	
	제주외항 3단계 ³⁾	2015.10.07		o 탁도, 페놀, ABS, 벤젠	
해양 저질	제3차 전국 무역항 ¹⁾	2015.11.11	T-N, T-P, Cu⊤, Pb,	TPH, 용매추출유분, t	
	제주항 탑동방파제 ²⁾	2015.11.19	Ni, Zn, Fe, Cd, Cr, As, Hg, Li, tPCBs, tPAHs	-	
	제주외항 3단계 ³⁾	2015.10.07	총 20개 항목	-	
 소음	제3차 전국 무역항 ¹⁾	2015.11.10~11.11	○ 소음도 및 진동레벨 총 2개 항목	-	
진동	제주항 탑동방파제 ²⁾	2015.11.30			
해양 생태계	제3차 전국 무역항 ¹⁾	2015.11.09	○ 동식물플랑크톤, 조하 대 저서동물, 어란 및	-	
	제주항 탑동방파제 ²⁾	2015.11.28~11.29	자치어, 조간대 저서동		
	제주외항 3단계 ³⁾	2015.10.03~10.08	물, 해조류, 해산어류		

자료 : 1.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제주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초안), 2016.02, 해양수산부

^{2.} 제주외항 3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016.01, 제주특별자치도

^{3.}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016.01,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 1.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제주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초안), 2016.02, 해양수산부

- 2. 제주외항 3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016.01, 제주특별자치도
- 3.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016.01, 제주특별자치도

그림 4.3-1 환경현황 문헌조사 지점도

제5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5.1 의견수렴계획

가. 지역주민 의견수렴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본 계획의 수립기관인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 신문공고(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등) 및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을 이용하여 공고할 계획임.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와 환경영 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공개하여 공 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계획대상지가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 및 해당지역 주민자치센터 등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공람장소는 해양수산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할 계획임.

3)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주민설명회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기간 중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설명회 장소는 해양수
 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에 포함하여 중앙일간지와 지역일간지에 계획의 개요, 주민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이며,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도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나.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 청, 본 계획대상지가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하여 검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5.2 의견수렴결과 등 공개

○ 공개기간 :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 14일 이상 게시

공개장소 : 관할 지자체 또는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망(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

○ 공개내용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가. 평가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나. 추진경위

○ 2015. 04. 07. :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위촉 및 심의요청 【항만개발과-1287】

○ 2015. 04. 07~21 :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심의기간 : 2015. 04. 07 ~ 04. 21 (15일간)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인원 : 협의회 위원장 외 8인

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총괄의견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바, 이에따른 세부적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 ·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O 대상지역의 설정은 대체로 적정하며, 계획대상지내 어업권 2개소가 위치하고 있는바,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토지이용 구상안

O 토지이용계획(안)의 각 시설별 산정근거를 제시하여, 토지이용계획(안)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변 경관변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계부 녹지 확충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3. 대안

○ 계획 및 입지대안에 따른 비교·검토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대안을 추가하여 비교·검토하여야 함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수치모형실험(해수유동, 부유사확산, 퇴적물이동 등)을 통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함.
 - 특히, 계획대상지내 어업권 2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시 부유사 확산 등으로 인하여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 계획대상지 인근 제주외항3단계 개발사업 등 이를 고려하여 영향예측을 시행 하여야 함.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O「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인근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되 반영이 불가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현재 제주항은 증가하는 관광객 및 화물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확장이 필요한 실정임

2016. 4 . .

심의위원 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과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할 경우에는 관련 계획에 제주도 환경보전계획, 제주시 연안관리지역계획, 제주시 환경보전 계획 등을 포함도록 하여 개발건설기본계획과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을 예측· 평가하여야 함

□심의의견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은 대규모 건설계획으로 대기질 영향 범위를 2km로 확대하여야 함
-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 3. 대안
 - 수요·공급량의 여러 조건을 변경·대입하여 적정한 외곽시설 규모와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수요·공급대안을 추가하여 설정·분석하여야 함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계획지역 주변해역의 허가된 어업권에 대한 환경영향을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평가분야에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예측·평가하여야 함
 - * 개발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부유사확산 수치모형 시험결과와 해양 동·식물상 부유물질 발생에 의한 영향결과를 참고하여 도면 중첩 등의 방법을 사용 예측·평가하여야 함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평가준비서 91~92쪽에 제시한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야 함
-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외곽시설 길이가 4.9km로 국내 타 항만시설보다 길이가 대형화 되어있어 항내 외의 해수흐름을 방해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해수소통구 설치방안을 강구 하여야 함

2016. 4. .

심의위원 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총괄의견

○ 제주 신항만 건설시 크루즈선 입항, 여객 증가 등으로 인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항만 개발에 따른 영향예측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수행하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한 저감방안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할 것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O 대상지역을 해양수질, 해양생태계(계획대상지 경계 2.0km), 대기질 및 소음· 진동(계획대상지 경계 1.0km)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시행시 광범위한 지역으로 환경적 영향이 예측될 경우 이를 확대하여 적용 할 필요 가 있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토지이용계획은 향후 항만여건 및 수요예측 등을 통해 적절하게 계획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임.

3. 대안

○ 계획 및 입지대안에 따른 비교·검토 뿐만아니라,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대안을 추가하여 비교·검토하여야 합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평가항목 및 영향범위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항만 건설에 따른 답동호안 부근 수로의 해수교환 저하에 따른 수질 악화가 예상되는바, 수치모 형실험 등을 통해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저감대책(해수소통구 설치 등)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O또한, 해수소통구 설치계획 수립시, 수치모형실협(해수유동 등)을 통하여 최적 위치 및 규모를 산정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O 주민의견수렴은 전략환경영향평가상 중요한 절차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제반철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O

2016. 4. 12.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현재의 계획은 외곽시설이 4,910m, 면적이 1,368,210㎡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현재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수유동 및 지형변화를 크게 발생시키며, 다양한 해양생물 서식지를 훼손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이러한 대규모 개발을 일시에 진행할 경우 주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따라서 매립규모 및 돌출길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안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O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최대한 확대하여야 함
- 2. 토지이용 구상안
 - O 매립규모 및 돌출길이를 최소화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3. 대안
 - 현재의 계획은 대규모 매립계획으로 현재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수 유동변화를 크게 발생시키며, 다양한 해양생물 서식지를 훼손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매립규모 및 돌출길이를 최소화하도록 충분한 대안검토가 이루어 져야 함
 - O 사업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대안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O 대안비교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충분한 조사 및 영향예측이 이루어져야 함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O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함

2016. 04. 12.

심의위원 맹 >

[첨부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양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총괄의견

○ 제주신항의 건설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매우 큰 규모의 사업으로 해양생대계의 파괴가 필연적으로 야기됨. 또한 주변 어장에 영향을 미쳐 어민 소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건설이 진행될 경우, 주변 생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또한, 신항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배출, 오·폐수 발생 및 상하수도 시설 등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은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됨. 다만,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부유 물의 영향을 그 법위를 모델로 재선정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본 평가준비서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구체적인 자료 제공 및 필요한 토지 면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대안

- 미래에 확장 가능성이 높아서 제 1안을 채택하였다고 하였으며, 어떤 근거로 확장 가능이 높은 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이번 개발사업은 해양에 매우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근 어장에 십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해양 동·식물상 조사에서 인근 해양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상업적 가치가 높은 어족자원의 변화와 생 태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법위와 피해액을 반드시 산정해야 함. 이를 근거로 사후 보상체계 및 법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함.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본 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함. 현재 기술된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할 경우, 차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으며,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도 수차례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화물부두의 개발에 대한 논리가 부족함. 제주신항으로 인해 화물의 수요가 중가할 것으로 인정되나, 예상 물량이나 구체적인 수치가 배우 부족함.

2016. 04. 24.

심의위원 박

(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총괄의견

- 본 사업지역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어업권에 심각한 피해 및 주변지역에 피해 가 우려되고 있어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어업권의 피해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사업법위를 확대하여 조 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한 영향을 저감을 수립해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0

2. 토지이용 구상안

0

3. 대안

0

- 4. 평가 항목·법위·방법 등
 - O 대기질 범위를 계획대상지로부터 2 km 범위로 확대할 필요 있음
 - O 사업지역은 제주외항 3단계 개발사업으로 인해 사업지역의 해양수질 및 퇴적 물의 오염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5번 지역 우측에 1-2개 지점을 포함 하여 조사할 필요 있음.
 - 사업지역 주변은 생활거주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해 소음진동 피해가 우려 되므로 법위를 1.5 km 법위로 확대할 필요 있음.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0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0

2016. 4 . 25 . 심의위원 감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평가)

□ 총 괄 의 견

○ 제주 해운함만 기능 확장을 통한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 확보는 제주가 지향하는 최우선 순위의 목표이며 미래 지향적인 필수 조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신항만 구역은 용연 일대와 용담 2~3동 일대에 해수의 역 방향 이동에 의한 해일피해외 우려와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으로 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 신항만 계획 대상지를 제주시 도두봉 앞바다에서 용담 3동(사수동)앞바다 서쪽 일대로 옮긴다면 주민이 밀집돼 있는 용담 2~3동 해안보호는 물론 제주에 또 하나의 자연유산인 용연과 용두암 관광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 심 의 의 견

1. 전략 환경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대상지역은 인접한 항만을 연계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는 조건을 잘 갖춘 지역으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용두암 관광지¹⁾ 조망권 훼손과 용담 2~3동 일대 해수 와류현상으로 해일과 해안 생태계 파괴 등으로 주민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계획이 현 대상지에 들어서이만 된다는 사유가 충분한 설득력을 얻는다면 과감한 설계변경을 필수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현 서쪽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의 방향을 동축으로 기울기를 45도가량 기울이고 역 조류의 영향으로 인한 파고를 줄일 수 있는 설계 변경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탑동과 신항만과의 이격거리를 300m 이상 이격시켜 조류의 흐름과 파고를 흡수시키는 기능을 살려야 한다. 즉, 기존 어항과 내항으로 동서 조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항내 해수의 산소 용적률을 높임으로서 물 썩음 현상을 방지하고 항만의 기능을 살려나가야 한다.

¹⁾ 용연과 용투암 일대는 2001년 3월 7일 제주기념물 제57호로 지정되었고, 지정구역 17,776m는 국유 지이다. 2008년 문화재청은 용연과 용투암 일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으나 주민의 반발 로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2. 토지이용구상안

- 1) 탑동과 신항만과의 이격거리를 300m 이상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요트장, 낚시터, 윈드서핑 등 해상 례저 공간 을 만들어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해 나간다.
- 2) 외곽 방파제에 해상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미관을 살리고 제주도 가 지향하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동참한다.
- 3) 풍력발전에서 얻어지는 전력으로 화려한 3D조명과 빔 프로젝트로 풍력발전기 날개와 시설물들을 예술화하고 그리고 모든 건물과 시설물을 밤의 왕국으로 조성해 제주에 또 하나의 야간 관관명소로 만들어 나간다.
- 4) 모든 건축물을 특색 있는 조형물로 꾸미는 등 관광객을 유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특화시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지역 명소로 꾸며나간다.
- 5) 제주시도의 구도심 재개발사업(건입동과 용담동)에 대형 면세점, 쇼핑아울렛, 시설 등을 유치하여 상권을 살려나가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지역민의 삶의 질과 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대안

1) 대안별 비교 및 검토: 입지 조정 대안에 있어서는 3안 중 1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인은 대상지 전체를 제주시 도두봉 앞바다에서 사수동(용담3동) 일대로 변경하는 안으로 대안제시 하고자 한다. 그이유로는 용담동 해안변 해수피해를 줄일 수 있고 도민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4. 평가 함목, 범위, 방법 등

1) 5.2 평가 방법범위 및 방법 설정에 있어서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의 안정성 평가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른 의견 즉 대안등 피해조사기관 선정 과정이 누락되어 있어서 자칫 주민의 의견들이 무시될 소지가 있다.

5. 주민 등에 의견 수렴계획

1)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 공고를 각각 2회 공고하고, 평가서 초안의 공람을 안내하는 내용은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인지 할 수 있 도록 배포하여 홍보토록 해야 한다.

- 2)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1) 용투압 관광지 조망권 훼손과 월파피해 대책
 - (2) 구도심 살리기 재개발 참여 및 방법에 관한 방안
 - (3) 충분한 친수 공간 확보 이용에 관한 방안
 - (4) 신항만 시설 야간 관광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에 따른 방안
 - (5) 도두동(도두봉)일대와 사수동 일대로 계획대상지를 옮기는 방안
 - (6)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보호에 대한 계획 방안
-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현 계획 적정성은 매우 용이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입지의 타당성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다른 대상지 선정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2016. 4. 20.

심의위원 이

>

i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O 매립 면적 이용과 산출 근거에 대한 제지 없음
- O 항만시설 이외의 과도한 매립은 환경훼손과 지역상권과의 충돌, 주민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 평가항목에 사회환경분야(교통, 인구, 재해, 원도심활성화 등) 추가
- O 항만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원도심과 제주도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 필요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O 신항만 부지 선정에 있어서 비교지 검토 등 선행 연구 필요함
- 2. 토지이용 구상안
- ○상업면적 부지가 전체 매립 면적의 31.3%를 차지하는데, 산출 면적에 대한 근거가 없음
- ○입지조정 대안(평가준비서 83쪽)의 비교안 2, 3안 이외에 매립 면적을 현저히 줄인 추가 대안 제시 필요함

3. 대안

- O'항만 기능 재배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항만의 기능을 높이고 매립 면적을 최소화할 것
- O어민들 반발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평가항목에 사회경제분야를 추가하여 아래의 항목을 추가할 것

- O 교통영향평가: 신항만 건설로 물류와 여객, 관광객이 매우 증가할 것이 예상 됨. 원도심을 통과하여 공항과 제주 여타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 분명하므로 원도심과 신제주 등 제주 도심의 교통영향에 대한 예측과 분석 필요
- O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 분석
- O 원도심 활성화 기여에 대한 분석. 원도십 활성화 방안
- O 상주인구 예측. 크루즈 관광객 및 여객 이용 관광객 수요 예측(2030년까지 계속 방문객이 늘 것이라는 예측에 대한 근거)
- O 재해영향평가:태풍, 월파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영향 분석 특히 태풍시 한천에서 발생할 부유물의 영향과 주변 동향 예측 필요. 탑동

호안 세굴 현상을 정확히 분석하고, 공사 구간의 선후차를 결정해야 함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럼계획
- 제주 시내권(교통, 상권, 경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주민설명회 횟수를 늘이고, 의견 수렴 기간도 늘이는 방안 검토 바람.
- O 대규모 국책사업일수록 도민들과의 소통과 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사전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전문가들이 주민과 소통하는 계획 마련
- 제주 도민 전체의 이해가 걸린 사안이므로 도민대토론회 등을 통해서 폭 넓 은 의견 수렴 필요
-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C

2016. 4 . 21 .

심의위원 김